



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39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11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 (위탁운영)에 의거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요

- 사업명 :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
- 위치 :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
- 설립일 : 1998. 02. 21
- 건물규모 : 지상 3층, 지하 1층 건축면적 307.03㎡ (연면적 633.59㎡)
- 직원수 : 3명 (관장 1, 상담사1, 관리자1)

나. 민간위탁 추진상황

- 수탁자 : 사)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(회장 고영배)
- 위탁기간 : 2015. 8. 5. ~ 2017. 12. 31 (2년 4개월)
- 위탁내용 : 노인복지회관 운영, 관련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
다. 향후계획

- 위탁사유 :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
- 계약기간 : 2018. 1. ~ 2023. 12. 31. (5년)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: '17. 11월

- 군 의회 동의(민간위탁 사무) : '17. 12월
-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: '17. 12월
-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: '17. 12월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및 선정 : '17. 12월
-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자 선정 개별 통보 : '17. 12월
- 위탁 협약체결 및 인수·인계 : '17. 12월

관계법령 발취

□ 노인복지법

제54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

제6조(위탁관리)

- ① 군수는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일부개정 2016. 12. 30>
- ③ 제2항의 위탁관리기간은 이를 갱신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군수가 노인복지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⑥ 수탁자는 제3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자(이하“사용·수익자”라 한다)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·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수탁자가 제3조의 업무수행 및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⑦ 수탁자는 관리인과 상담요원을 배치하되, 상담요원은 사회복지사3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.